漁港消息

발행겸 편집인 孫井植
인쇄인 金在克

特殊法人 韓國漁港協會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705-9

TEL. 568-6651~3
568-5595~6
FAX. 568-6653

月刊 : 비매품

등록번호 : 라3459
등록일 : 1988년2월19일

會訓

● 創意 ● 奉仕 ● 誠實

活力있고 快適한 漁港漁村 建設

漁港확충 漁業 생산성 提高 지역開發 效果도 높일 수가

「農發委」 최종報告書서 지적

해양 觀光과도 연계 據點港 현대화 時急

농어촌발전위원회는 어촌지역개발을 위해서는 어항의 확충이 필수적으로 건설 분야의 예산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위기에 직면한 우리나라 수산업과 어촌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의지 표현으로 받아들여진다.

수산업이 어렵고 어촌이 황폐화 되어가고 있는 현상은 예기치 못했던 자연재해나 이보다 더한 천재지변 때문이 아니다. 이는 그동안 정책부재로 인한 바다오염, 자원고갈, 기반시설의 취약, 도·농·어간의 소득격차 그리고 정주환경의 낙후 등의 요인 때문이다.

더욱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로 오는 97년부터 수산물 시장이 완전 개방되면 우리 어민은 더이상 설자리가 없게 될 것이다.

정부는 이에대한 대책으로 서둘러 농특세 재원을 마련하여 농어업 경쟁력 강화부문 9개사업에 9조7백75억원(60.5%),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부문 5개사업에 4조1천40억원(27.4%), 농어민 복지증진부문 7개사업에 1조8천1백85억원(12.1%) 등 3개부문 21개사업으로 나누어 앞으로 10년간 15조원을 투자해 나갈 방침을 세웠다.

이 가운데 순수 수산부문에만 투입되는 예산은 1조3천5백35억원이다. 특히 어항부문에는 92년 이전에 착공된 1·3종어항 건설에 오는 98년까지 3천3백억원, 2종어항 건설에 2004년까지 4천5백억원 등 총 7천8백억원의 농특세 재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어항건설예산은 그동안 개발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이었으나 근년에 들어 6백억원 안팎의 수준으로 집행되어 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농특세 재원을 합쳐 연간 1천5백억원 이상 투자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어항건설예산의 대폭적인 확대는 어항협회가 87년 창립이후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내용이라는 점에서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어항건설 예산이 하드웨어 분야라면 이에 못지않게 중요시 되는 것은 어항기술 개발 및 조사, 연구 등의 소프트웨어 분야이다.

늘어나는 어항건설예산의 투자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부문을 적극 개발하여 가장 효율적인 최선의 투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와함께 예산규모가 커지면 그만큼 업무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논리이다. 그렇다고 축소지향 추세의 정부에서 이같은 업무를 모두 감당하기란 사실상 벅찬 일이다.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시점에서는 과중한 업무를 선별적으로 과감하게 민간으로 이양해서 역할을 분담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지난해 어항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한국어항협회는 지난 3월30일 특수법인으로 승격됐다. 물론 어항개발을 위한 기술의 발전과 어항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도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는 한번의 법 개정만으로 협회를 내팽개쳐서는 안된다. 정부는 협회에 법적으로 부여된 기능과 역할을 활발히 수행케해야 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성과도 요구해야 한다.

한국어항협회를 특수법인으로 승격시킨 이상은 효율적 어항개발을 위한 소프트웨어분야의 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정부적 기능을 일부 분담케 하여 민·관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협회의 용역사업비, 경상경비 지원 등에 대해 망설이거나 인색해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의 일관성 있는 지원을 기대한다.

漁港 투자 增加 技術 開發등도 隨伴돼야 효과

行政 담당 限界 … 役割 분담 시켜야

焦点 「漁港協會」등 活用을 相互보완 成果 기대

用役·經常費 지원 果敢해야

농어촌발전위원회는 어촌지역개발을 위해서는 어항의 확충이 필수적으로 어항의 개발은 어업 육성 뿐만 아니라 지역개발, 해양관광과 연계될 수 있도록 어항을 중심으로 광역적 개발방식을 추진하여 지역개발 효과를 높여가야 한다고 밝혔다.

농어촌발전위원회는 이 보고서에서 어항의 낙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어항시설을 확충하고 항간 거리 및 어장간의 거리를 단축함으로써 생산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거점어항을 현대화하고 어항을 중심으로 어촌지역 개발을 위해서 지난 19일 농어촌발전위원회가 청와대에 제출한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어항의 생산성을 높이고 주민의 교통편의를 높여가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어항을 확충하여 어업의 낙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항시설을 확충하고 항간 거리 및 어장간의 거리를 단축함으로써 어항의 생산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거점어항을 현대화하고 어항을 중심으로 어촌개발 종합프로그램을 수립·추진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專擔部署·申告센터 設置 漁港 不實시공 豫防策을 强化

수산청은 어항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지난 7월 5일부터 부실·안전점검 전담부서와 부실신고센터를 설치, 운영에 들어 갔다.

수산청은 부실·안전점검 전담부서는 본청 어항과에, 부실신고센터는 수산청에서 발주한 어항건설공사를 직접 집행하는 동·서·남해어항사무소에 설치했다.

각 어항사무소는 관할 구역내에서 신고된 부실사안에 대해 현지조사후 조치계획과 시정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고,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본청 어항과에서 부실시공 방지 및 안전점검 등을 현지 지도 방문시 시정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부실신고센터

△동해어항사무소 (0391)662-7923 △서해어항사무소 (0654)61-5285 △남해어항사무소 (0662)41-3361

發注處 직계약 範圍 확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에 공사계약을 의뢰하지 않고 직접 집행할 수 있는 공사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정부는 조달청계약체결 정부공사범위를 국가기관 발주공사의 경우 예정금액 2억원이상에서 20억원이상으로, 서울시를 제외한 전 지자체에서 발주한 공사의 경우에는 1백억원이상의 대형특수공사로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조달기금법시행령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국가기관은 공사예정금액 20억원(전기통신 및 전문공사는 3억원) 이상규모의 공사만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고 20억원 미만의 공사는 모두 자체집행할 수 있게 됐다.

또 직할시와 시·도·군·구 등 지자체는 1백억원이상의 규모로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 대상공사, 대안입찰 및 설계시공 일괄입찰 대상공사 등 대형특수공사만 조달청에 의뢰하고 일반공사는 모두 직접 집행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조달기금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는 공사의 경우도 발주기관이 원할 경우 종전과 같이 조달청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種港에 4千5百億 사업집행요령도 마련

2004년까지

수산청은 농특세 재원의 집행계획과 관련, 제2종어항에 올해 추경예산 3백억원 등 오는 2004년까지 총 4천5백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수산청은 이에따라 효율적인 사업집행을 위해 제2종어항 시설사업 집행요령을 마련했다.

집행요령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시설계획 수립 및 항별 사업비를 배정할 때는 수산청장과 사전에 협의토록 했다.

투자대상항은 94년 7월 14일 현재 제2종어항으로 지정된 항으로서 수축·정비확장항에 한하며 경미한 시설이나 유지보강은 제외된다.

또 항별 사업비는 완공위주로 집중투자하되 △계속투자항으로서 잔여사업비가 23억원 이내인 항 △완공까지의 총소요액이 50억원 이내인 항 △완공까지의 총소요액이 50억원 이상인 항으로서 5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비에 대한 지방비 투자계획이 수립되어 완공이 확실한 항으로 우선순위를 두었다.

이와함께 항별 완공연도의 소요사업비 7억원 이내인 항을 제외하고는 1회계연도당 7억원 이상 투자되도록 했다.

첫 漁港청소船 海域별로 운영 내년까지 7隻

수산청은 어항간 이동이 용이한 15톤급 어항청소선 7척을 건조, 어항내로 유입되는 쓰레기 오물을 제거하는 등 1·3종 어항환경을 정화해 나갈 계획이다.

수산청은 우선 오는 9월에 준공되는 4척의 어항청소선을 동·서해어항사무소에 1척씩, 남해어항사무소에 2척을 배치키로하고 운영에 필요한 관리·운영지침을 각 어항사무소에 시달했다.

이 지침에 의하면 제1·3종어항이 아닌 어항이라도 시·도지사(시장·군수), 수협조합장의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는 선박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어항청소선은 로다형원치로 어항내 부유물과 수면아래 가라앉은 오·폐물을 수거하고, 해상크레인으로는 어선의 입출항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수산청은 이와함께 내년 4월까지 나머지 3척을 준공, 동·서·남해 어항사무소에 각각 1척씩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어항 施工業體대상 設問조사

감독 公務員 변화

誠意있고 친절해졌다

의식 개혁·單價현실화 돼야

수산청은 최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94기강확립 대책 세부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어항공사를 직접 시공하고 있는 시공업체의 의견을 들어 앞으로 어항건설과 관련, 부정 비리 등의 취약분야 개선의 제반자료로 사용코자 1·3종어항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항건설 감독공무원의 직무태도는 성의있고 친절하며, 분민정부 이후 많은 행동변화가 있으나 아직 일부 현장의 업체 직원들에게는 고압적인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부분의 응답자는 감독공무원이 청렴하다고 응답했으나 의식개혁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부실공사 방지에 대한 범정부적 노력에 대해서는 시공업체가 적극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부실공사 방지에 지대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부실공사 방지대책을 위해서 건설업체 종사자의 의식개혁과 단가의 현실화가 병행되어야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공사진행상의 애로점으로는 석산개발, 태·폭풍 등의 악천후, 공사장이 도서벽지에 위치, 주민집단 민원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1. 어항건설공사 현장주재 감독공무원의 직무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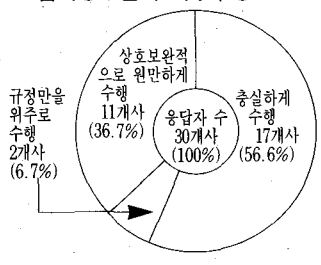

2. 감독공무원들의 업무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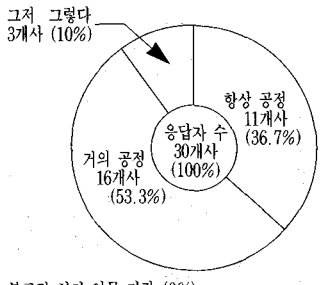

3. 감독 공무원 청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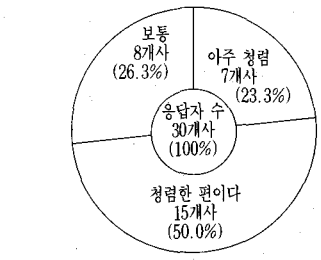

4.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는 감독 공무원의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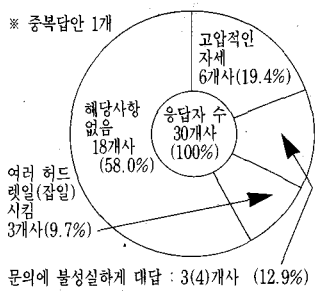

5. 감독공무원의 업무중 업체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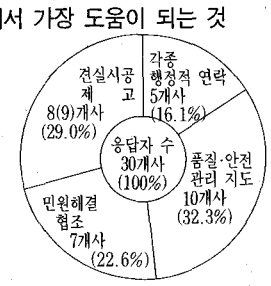

6. 공사와 관련된 문의전화에 대한 답변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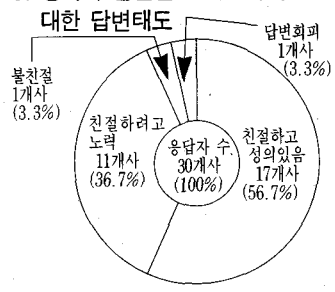

7. 어항사무소의 업무처리(집행)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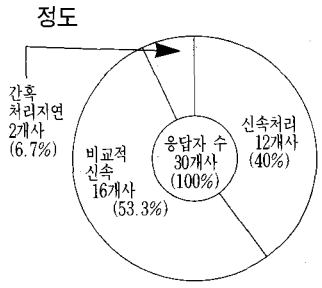

8. 관계공무원과의 사적인 친분과 공사의 원만한 집행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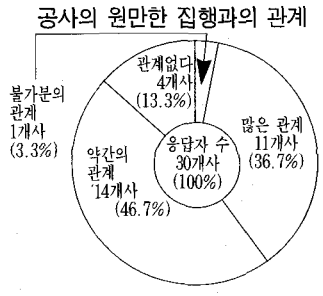

9. 문민정부 이후 관계공무원의 행동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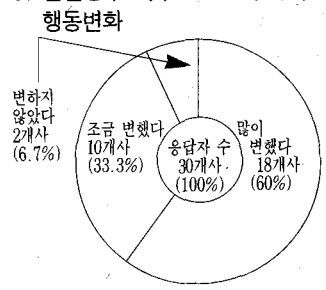

10. 최근 범정부적인 부실공사 방지 노력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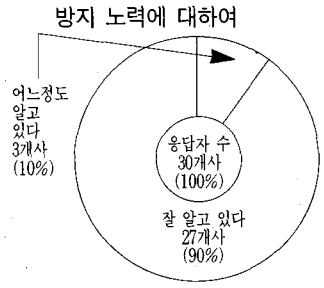

11. 범 정부적인 부실공사 방지 노력에 대한 인식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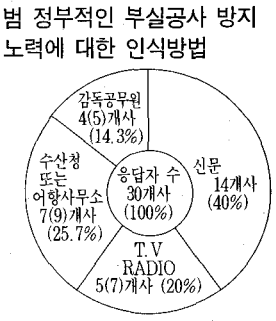

12. 현재의 부실공사 방지 대응 방식의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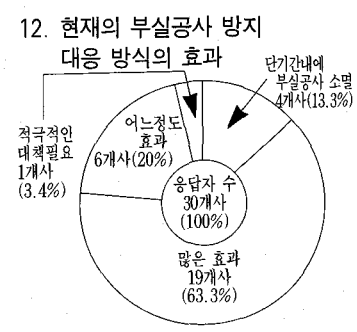

13.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앞으로의 대책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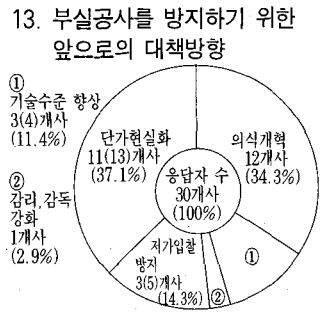

14. 시공중 주로 경험한 민원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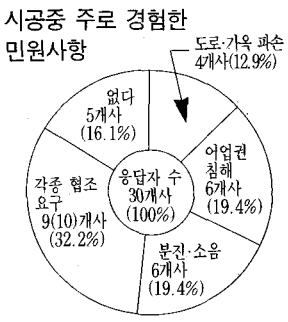

15. 시공도중 설계변경 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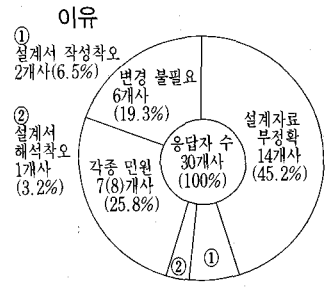

16. 공사진행에 가장 큰 애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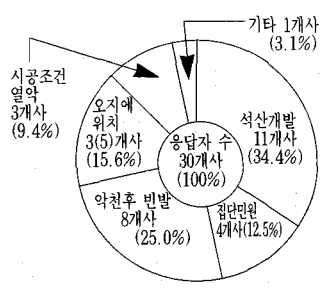

動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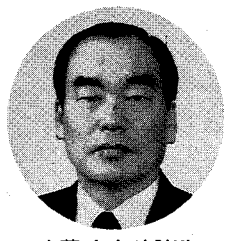
李義秀 수산청장

▲이희수 수산청장은 7월 1일 94년도 상반기 우수·모범공무원 포상식을 거행, 이어 당정협의회에서 94년도 추경예산을 보고, 5일에는 한·불 어업회담 불란서측 수석대표의 내방을 받고 현안을 협의, 7일에는 전경연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 참석, 11일에는 캐나다 수산해양부 장관의 내방을 받고 양국 어업현안을 협의, 15일에는 민자당 수산분과위원회 설명회에 참석, 19일에는 청와대에서 열린 상반기 국정평가 보고회에 참석, 20일에는 남해안 양식어장 등 수산동향 확인 및 어민격려차 경남·전남지역으로 출장.

李方鎬 수협중앙회장

▲이방호 수협중앙회장은 7월 5일 이달의 새어민상을 시상, 7일에는 수협 녹번동직매장 개장식에 참석, 12일에는 국회 재무위원회에서 업무보고, 13일에는 국회 농수산위원회에서 업무보고, 22일에는 이사회를 개최, 25일에는 도지회장회의를 주재.

河星煥 한국어선협회장

▲하성환 한국어선협회장은 7월 8일 마포 가든호텔에서 열린 부산수대 재경동창회 94년도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추대.

▲손정식 한국어항협회장은 7월 5일 수산청산하단체장 회의에 참석 어항현안을 건의, 7, 12, 19일에는 경제기획원을 방문 어항현안을 협의하고 협조를 담부, 14일에는 민자당중앙상무위원회 수산분과위원회의에 참석, 18일에는 협회 회의실에서 어항사 발간 위원회를 주관, 19일에는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연세대 고위경제과정 총동창회 주최 김대중 아시아태평양재단이사장 초청 학술세미나 「우리민족을 생각한다」에 참석, 20일에는 협회회의실에서 어항종합개발 연구사업 전체회의를 주관, 21일에는 양창식 국회농림수산위원장을 예방하고 어항현안을 협의.

▲배환갑 영생건설주식회사 회장은 7월 22일 충무지원 조정위원회에 참석.

▲최상옥 남화토건주식회사 회장은 7월 1일 문화원 도지부 향토문화심포지움에 참석, 2일에는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상임위원회에 참석, 이어 광주음악진흥회 임원진회의에 참석, 13일에는 바르게살기중앙협의회 국회업무보고에 참석, 14일에는 광주전남 갱생보호대회에 참석.

▲정덕용 주식회사삼건사 사장은 7월 7일 항만협회 이사회에 참석.

▲조남욱 삼부토건주식회사 회장은 7월 11일 세계경제연구원 조찬간담회에 참석, 15일에는 숙정재단 이사회에 참석, 25일에는 롯데호텔에서 열린 민자당 재정위원 오찬간담회에 참석.

▲양성후 세기건설주식회사 회장은 7월 8일 소년선도 정기총회에 참석.

▲송재성 주식회사성호 회장은 7월 15일 삼천포현장에 출장.

인사이동

▲주식회사삼양사(대표이사 염민웅)

▲신풍건설산업주식회사(대표이사 길동한)

▲동광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황금추)

▲장항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최병규)

▲영광군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조병남)

▲주식회사세광종합기술단(대표이사·최석환)

회비납부

□국장급 승진

△국립수산진흥원장 박병하 △수산공무원교육원장 배평암

□국장급 전보

△어업진흥관 서승욱 △시설국장 조우연

□과장급전보

△증식과장 김민령 △어업지도선관리사무소장 박해용

自然조화형 漁港 정비

日、모델항 실험통해 기술보급

일본 수산청은 앞으로 어항정비사업에 자연환경과 조화된 구조물 공법 등을 적극 도입키로 했다.

이에따라 자연환경보전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올해는 모델항을 지정, 실험을 통하여 기술을 축적 보급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방파제마운드 사면에 산란장이나 치어보호 공간을 만들거나, 항내의 수질 저질보전을 위해 해수교환 촉진기술을 개발하기로 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자연조화형 어항만들기 사업은 자연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보완경감하는 새로운 인식의 도입이 그 특징이다.

이 사업의 주요골자는 △주변환경 등의 조사공법 검토 △해수교류의 촉진과 수질보전 △주변의 자연환경 등을 고려한 구조의 어항시설 정비 △정비후의 추적조사 실시 등 어항주변해역의 지역 해상 등에 응할 수 있는 자연환경으로 되돌아가는 형의 여러가지 기술을 도입, 그 효과를 검증하고 기술을 축적하면서 자연조화형 어항을 점차적으로 증가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 사업에 도입될 신기술은 수산청 뿐만 아니라 타부터 관계기관이 개발한 기술도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완경사호안 마운드, 해조이식, 증양식블록 등 생물공생형시설외에 항주변의 수질과 저질정화를 위한 해수교류형 방파제, 잠제, 사석, 오수처리시설 등의 분야이다.

最尖端기술 活用

海域환경評價 기술개발

일본 熊谷組는 CCD카메라 애니메이션 화상해석시스템 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조석 및 조류를 해석하는 해역환경평가기술을 개발했다.

이 평가기술은 수치시뮬레이션과 수리모형실험에 의해 수치시뮬레이션을 실시, 만내의 조류 및 오염물질의 확산을 해석할 수 있는 것으로 결과는 애니메이션으로 확인 가능하다. 해양수조실험과 컴퓨터해석에 의한 이번 해역환경평가기술은 인공섬을 건설했을 경우 조류 해수교환율의 변화를 모형실험과 수치해석에 의해 조사하고 수질개선책으로 바깥해수의 도입 및 선로의 굴삭을 제안하고 있다.

漁港개발硏究事業 첫 全體會議

斯界전문가 참여 內容·方向등 협의

孫회장 主宰 "21世紀 비젼 提示" 당부

한국어항협회는 지난 20일 협회회의실에서 어항종합개발 연구사업에 관한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손정식 회장이 주재한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업계, 학계, 연구계, 관계 공무원과 연구·자문위원 등 20여명이 참석, 연구사업의 내용·방향에 대해 진지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번 회의는 협회가 21세기를 향한 우리나라 어항정책의 비젼을 제시키 위해 지난 6월에 착수한 정부용역사업과 관련, 그동안 분야별 과제에 대한 연구계획을 종합하여 사계 전문가의 심도있는 자문을 구함으로써 보다 객관화되고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최상의 연구성과를 거두기 위한 것이다.

■ 한국어항협회는 지난 20일 어항종합개발 연구사업에 관한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第6次先進어항어촌 視察

日·豪·뉴지등 3개국대상

한국어항협회는 오는 10월 10일(월)부터 20일(목)까지 제6차 해외선진어항어촌시찰단을 파견할 계획이다.

지난해에 이어 10박 11일 동안 일본 鹿兒島현의 枕崎어항, 今和泉어항, 熊本현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3개국의 주요 어항을 폭넓게 살펴보게 될 이번 시찰단은 우리나라 어항개발을 위한 기술의 발전과 어항에 대한 조사 연구 및 활력있고 쾌적한 어항어촌건설의 촉진과 효율적 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어항의 정화에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 뉴질랜드의 오클랜드항, 그리고 세계적 미항이면서 첨단 어항의 시설을 자랑하는 시드니항의 호주의 시드니항의 항세와 건설기술, 관리상태, 수산여건 및 현황에 대해서 각국 어항관련 기관 단체의 안내를 받아 체계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한국어항협회는 이번 시찰에서는 우리나라와 여건이 비슷한 일본 鹿兒島현의 枕崎어항, 今和泉어항, 熊本현 등 3개국의 어항을 폭넓게 살펴보게 될 이번 시찰단은 우리나라 어항개발을 위한 기술의 발전과 어항에 대한 조사 연구 및 활력있고 쾌적한 어항어촌건설의 촉진과 효율적 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어항의 정화에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 뉴질랜드의 오클랜드항, 그리고 세계적 미항이면서 첨단 어항의 시설을 자랑하는 시드니항의 호주의 시드니항의 항세와 건설기술, 관리상태, 수산여건 및 현황에 대해서 각국 어항관련 기관 단체의 안내를 받아 체계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土木공사 內譯入札制

15億이상 높여야

專門建協건의

전문건설협회는 현재 공사예정금액 1억원이상의 토목공사에 적용하고 있는 내역입찰제를 15억원이상 토목공사에 대해 시행해 주도록 재무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전문건설협회는 정부기관에서 발주하는 토목공사가 대부분 1억원이상으로 이들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입찰금액산출내역서를 작성해 제출하게 돼있으나 실제로 기능하는 것은 낙찰업체의 산출내역서 뿐이며 낙찰업체를 제외한 입찰참가업체들은 내역서 작성에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 토목공사의 내역입찰을 15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건설시장개방을 앞두고 국내건설업체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행정쇄신 차원에서도 토목공사의 경우 예정금액 15억원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15억원미만의 중소규모 토목공사 입찰에 대해서는 내역서를 생략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예산회계법시행령에는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이상인 토목공사와 30억원이상인 건축공사는 입찰시 입찰금액산출내역서를 첨부하게 돼있다.

PQ요령등 7個 會計豫規 개정

工程 50%이상 工事실적 인정등

재무부

재무부는 시공중인 공사를 유사공사 실적으로 인정해 주는 등 입찰참가자격 심사요령을 개정, 새로 개정한 회계예규와 함께 지난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또 예산회계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계약사무처리규칙을 고쳐 건설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공종별로 명문화했다.

개정된 회계예규에 따르면 먼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은 지금까지 준공실적만을 인정해 왔으나 예정공정표상 50%이상 시공 중인 동종공사의 실적을 유사한 종류의 실적으로 인정, 실적인정폭을 확대했다.

또 P·Q심사의 분야별 배점한도를 조정, 시공경험은 40점에서 30점으로, 경영상태는 20점에서 30점으로 조정했으며,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의 조정범위도 10%에서 20%범위까지로 융통성을 부여했다.

이와함께 수의계약운용요령은 제1차 공사의 낙찰률이 85%미만인 경우로 수의계약 대상공사가 제한적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공사(예정가격 1백억원미만)인 경우에는 당해공사 예정가격의 85%상당금액이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지금까지 계속 공사의 수의계약은 당해공사의 예정가격에다 제1차공사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이하로 결정됐다.

最低價·적격落札 원칙

정부조달·契約法개정

정부공사의 계약은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낙찰자결정 방법도 최저가낙찰제 및 적격낙찰제를 원칙으로 하여 새로 제정되는 「정부조달 및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규정키로 했다.

그러나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우 시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낙찰자 결정방법 역시 양허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별도의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제도개선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근 재무부가 마련하여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한 정부조달 및 계약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예산회계법에 규정된 계약편 23개 조문을 흡수 개편, 계약방법은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제한경쟁입찰과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그 범위와 기준을 대통령령에 정하기로 했다.

특히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대상은 현재 법률로 규정돼 있으나 제한기준이나 지명기준과 같이 대통령령에 규정, 운영에 신축을 기하기로 했다.

정부勞賃單價기준폐지

建協조사 공표價로

재무부는 최근 정부 계약시 예정가격작성방법을 개선, 이같은 방안을 오는 앞으로 정부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기준이 되는 정부노임단가가 없어지고 대신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한 가격을 기준하게 됐다.

8월 계약사무처리규칙과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회계예규) 개선에 반영토록 했다.

따라서 지금까지 매년 초 재무부가 결정 고시하던 정부노임단가기준이 폐지되고 공사부문의 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가, 제조부문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으로 대신하게 됐다.

재무부는 이와함께 발주관서의 장은 당해 계약목적물 및 공사현장의 특수성을 감안, 건설협회가 조사한 노임가격의 15% 범위안에서 가감이 가능하도록 융통성을 부여했다.

제7회 어항 어촌 사진공모

21세기를 향한 선진 어항 문화 창달과
어항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자
어항 어촌사진을 공모합니다.
올해로 일곱번째를 맞이하는
저희 어항 어촌사진공모는 그동안
어항 어촌개발 촉진과 효율적 관리에
이바지한 것으로, 수산계서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응모요령

- 작품내용:어항어촌을 중심으로한 수산업과 관련되는 모든 작품으로서 국내외 미발표 자유작
- 출품자격:회원, 사진영상 애호가
- 규격:칼라 16×20(장정불요, *원판필름 필히 제출)
- 출품기간:94년8월1일~8월16일(우편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
- 출품료:1인당 1만원(반송료 포함) 5점 이내
- 발표 : 94년8월19일(본회 회지 및 개별 통지)
- 접수처: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5-9(삼흥빌딩 1805호) 한국어항협회 (전화:568-6651~3, 568-5595~6)
- 사진작가협회 입회점수 인정
- 본 공모전 입상 및 입선작은 주최측(한국어항협회)에 귀속하며 이를 전시
- 동일작품 및 유사작품을 이중으로 출품하여 입상, 입선될 경우 상권이 취소됨은 물론 회원은 제명 조치되며 비회원은 입회자격이 10년간 유보됨에 유의하시기 바람
- 출품표에 촬영장소, 화제,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필히 명기

시상내역

- 금상(1점) : 수산청장 상패 및 상금(1백만원)
- 은상(2점) : 수협중앙회장 및 한국어선협회장 상패 및 상금(각 50만원)
- 동상(2점) : 한국원양어업협회장 및 한국수산회장 상패 및 상금(각 30만원)
- 가작(5점) : 한국어항협회장 상장 및 상금(각10만원)
- 입선(1백점 이내) : 상장

어·항·교·실

漁港計劃樹立의要領

〔59〕

給油 施設 用地

② 保有空地

옥외 탱크주위에는 〈표1〉에 있는 폭의 공지를 보유해야 한다. 다만 동일 부지내에 2개 이상의 탱크를 설치하는 경우는 〈표2〉에 표시한 폭의 2/3의 보유공지를 갖지 않으면 안된다.

③ 防油堤

위험물이 유출되는 경우는 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방유제를 설치해야 한다.

㉮ 방유제의 용량은 당해 탱크의 용량 110%이상으로 하고, 2개 이상의 옥외 저장탱크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의 용량은 당해 탱크 중에 그 용량이 제일 큰 탱크의 용량 110%이상으로 한다.

㉯ 방유제의 높이는 0.5m 이상으로 한다.

㉰ 방유제 내에 설치하는 옥외 저장탱크의 수는 10개 이하로 한다. (방유제 내에 설치하는 모든 옥외저장탱크의 용량이 200㎘ 이하로서 당해 옥외저장탱크에 저장하고 취급 위험물의 인화점이 70℃~200℃ 미만일 경우는 20개)

㉱ 방유제 직경이 15m 미만일 경우는 탱크 높이 1/3 이상의 거리, 15m 이상의 경우는 탱크 높이의 1/2 이상의 거리에 둔다.

④ 構內道路

방유제 내에 설치하는 옥외저장탱크는 주위를 〈표2〉에 명시한 노면 폭을 갖는 구내도로에 직접 연결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방유제 내에 설치하는 탱크의 전부에 대해서 그 용량이 어느것도 200㎘이하인 경우는 〈표2〉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도로나 공지에 연결되어 있으면 충분하다고 되어 있다.

탱크의 標準寸法과 所要面積

급유탱크의 표준촌법은 탱크설치 회사의 자료에 의하면 〈표3〉과 같다. 또 어항에 설치되어 있는 급유탱크의 평균촌법은 〈표4〉와 같이 되어 있다.

〈표 1〉 공지의 폭

위험물의 최대수량	공지의 폭
지정수량의 500배 이하 (정유, 경유 250톤 이하, 중유 1,000톤 이하)	3m 이상
지정수량의 500~1,000배 (정유, 경유 250~500톤, 중유 1,000~2,000톤)	5m 이상
지정수량의 1,000~2,000배 (정유, 경유 500~1,000톤, 중유 2,000~4,000톤)	9m 이상
지정수량의 2,000~3,000배 (정유, 경유 1,000~1,500톤, 중유 4,000~6,000톤)	12m 이상
지정수량의 3,000~4,000배 (정유, 경유 1,500~2,000톤, 중유 6,000~8,000톤)	15m 이상
지정수량의 4,000배 이상 (정유, 경유 2,000톤 이상, 중유 8,000톤 이상)	15m이상으로서 당해 탱크의 최대 직경 또는 높이와 같은 거리 이상

〈표 2〉 구내도로의 노면폭

옥외저장탱크 용량	구내도로의 노면폭	
	인화점이 70℃미만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	인화점이 70℃~200℃미만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
5,000㎘ 이하	6m 이상	6m 이상
5,000~10,000㎘	8m 이상	
10,000~50,000㎘	12m 이상	8m 이상
50,000㎘ 이상	16m 이상	

〈표 3〉 급유 탱크의 표준촌법

(단위 : ㎘)

높이(m) / 직경(m)	1,575	3,085	4,595	6,105	7,615	9,125	10,635	12,145	13,655	15,165	16,675	18,185	19,695	21,205	높이 1m당 용량(㎘)
3,872	18	36	54	71	89	107	125	142	160						11.77
4,842	29	56	84	112	140	167	195	223	251	279					18.41
5,811	41	81	121	161	201	241	282	322	362	402	442				26.52
6,780	56	111	165	220	274	329	383	438	492	547	601	656			36.10
7,750	74	145	216	287	359	430	501	572	644	715	786	867	929	1,000	47.17
8,719	94	184	274	364	454	544	634	725	815	905	995	1,085	1,175	1,265	59.70
9,688	116	227	338	450	561	672	783	895	1,006	1,117	1,229	1,340	1,451	1,563	73.71
10,656	140	275	409	544	679	813	948	1,083	1,217	1,352	1,487	1,621	1,756	1,891	89.18
11,623	167	327	487	647	807	968	1,128	1,288	1,448	1,609	1,769	1,929	2,089	2,249	106.10
12,592	196	384	572	760	948	1,136	1,324	1,512	1,700	1,888	2,076	2,264	2,452	2,640	124.53
13,562	227	445	663	881	1,100	1,318	1,536	1,754	1,972	2,190	2,408	2,626	2,845	3,063	144.45
14,531	261	511	762	1,012	1,262	1,513	1,763	2,014	2,264	2,514	2,765	3,015	3,266	3,516	165.83
15,500	297	582	867	1,151	1,436	1,721	2,006	2,291	2,576	2,861	3,146	3,431	3,716	4,001	188.69
16,468	335	657	978	1,300	1,621	1,943	2,265	2,586	2,908	3,230	3,551	3,873	4,194	4,516	212.99
17,436	376	736	1,097	1,457	1,818	2,178	2,539	2,899	3,260	3,621	3,981	4,342	4,702	5,063	238.77

(□)이 통상 이용되는 촌법

〈표 4〉 급유탱크의 평균촌법

능 력	직 경	높 이
5 ㎘	1.85 m	2.12 m
10	1.92	4.33
15	2.27	4.34
20	2.54	4.33
30	3.11	4.36
50	3.68	5.27
60	3.93	5.40
70	4.20	5.50
100	5.08	6.03
150	6.08	5.62
200	6.78	6.04
300	7.70	7.55
500	9.28	8.48
700	9.60	10.41
1,000	11.62	12.18
1,500	13.60	12.10
2,000	15.45	12.16
6,000	23.20	15.20

건·강·하·게·삽·시·다

녹내장과 백내장

40대부터 반드시 안압 측정하도록

백내장, 인공수정체 이식수술해야

◇ 녹내장

40대 이상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것이 그냥 간과되는 것같다. 즉 안압을 측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안압을 재는 이유는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고 소위 녹내장이 있는지를 검사하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걱정하는 당뇨병은 인간의 0·8%, 자궁경부암은 0·4%가 걸리지만 40세 이상의 인구는 약 2%에서 발생하는 녹내장을 소홀히 취급하고 있다.

녹내장의 증상은 안압이 상승되어 두통이 오고 시신경이 점점 퇴화되어 결국 실명을 가져오게 된다.

이 녹내장의 종류는 1차적인 것으로 선천적인형과 성인형으로 구분하고 2차적인 것으로 상처, 암, 염증 또는 스테로이드를 씀으로써 안압이 증가되어 생긴 녹내장으로 나눈다.

이 증상은 안압기로 눈의 압력을 재어 20㎜Hg 이상인 경우 진단되며 치료는 내과적 방법과 외과적 방법이 있다.

내과적 방법은 소위 안압을 형성하는 일종의 액의 생성을 감소시켜주는 것으로 요즈음은 외과적 방법으로 수술하여 액을 배출시키는 통로를 만들어 주는 방법이 선호되어 있다.

그러나 예방관리의 첩경은 정기적으로 안압을 측정하는 것이다.

◇ 백내장

백내장이란 안구의 수정체, 즉 렌즈나 캡슐이 희미해져 밝은 빛이 없어진 병이다.

이것은 대개 병으로 생각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안정밀검사를 해보면 인간이면 누구나 렌즈가 혼탁해 있다.

그 원인은 아직 확실치 않으나 대개 렌즈의 섬유단백의 변화나 렌즈캡슐을 통한 액체의 흡입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그 종류는 대개 5가지가 있는데 선천적인 것, 노인성, 어느 질환의 합병증에 의한 것, 외상에 의한 것 등으로 나눈다.

이중 노인성 백내장을 살펴보면 대개 40대 이후에 나타나며 특히 60세 이후에 많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그 빈도가 높아진다.

증세는 눈에 뭐가 떠다니는 것 같다든지 앞에 안개가 낀듯이 보이며 대개 양쪽 눈에 한꺼번에 증세가 생긴다.

합병증성 백내장은 눈내부 또는 전신질환의 합병증으로 생긴다. 예를들면 만성안노염, 심한 녹내장, 망막박리, 당뇨병, 아토피성피부염 등의 합병증으로 발생한다. 독성 백내장은 특히 어떤 약을 오래 사용할 때 생기며 예를들면 스테로이드를 사용할 때 잘 생긴다.

백내장 치료방법은 단지 수술밖에 없다. 혼탁된 렌즈를 뽑아 버리고 인공수정체를 이식 수술하는 것이다.

♣ 생활법률

교통사고와 관련된 법률상식

소송하기전 원만한 합의가 최선

자동차 명의이전을 하기 전의 사고에 대한 책임

자동차를 팔았으나 자동차 등록원부의 등록명의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동안 사고가 났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은 어떻게 되는가

매도인이 계약금만 받고 중도금과 잔금을 받기전에 자동차를 인수해 간 매수인이 사고를 낸 경우에는 매도인도 배상책임을 진다. 그러나 매도인이 잔금을 받은 후 명의이전서류까지 모두 건네주었으나 단지 매수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채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요컨대 자동차의 운행을 누가 지배하고 있으냐, 운행의 이익을 누가 보고 있느냐가 책임의 소재를 결정하는 중요한 조건이라고 하겠다.

차주 등의 손해배상 책임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해 운전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데, 차량의 소유자도 배상책임을 지는지를 묻는 사람이 많다. 당연히 차주 등은 운전자가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물론 차주 등이 운전자의 과실이나 자기의 과실없이 일어난 사고이며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고 자동차의 구조상 결함이나 기능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차주 등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겠지만, 보통 이와같은 것을 증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차주 등은 거의 책임을 지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위자료란 무엇인가

위자료란 피해자 등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액을 말하는데 이는 성질상 주관적 사정, 피해자와 가해자의 자력, 사회적 지위에 따라 동일하지 않으므로 결국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피해자의 상속인에게 위자료 청구권이 상속되며, 사망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은 배우자나 형제자매 등 특별관계가 있는 자에게는 그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이 있다.

과실상계란 무엇인가

사고발생에 있어서나 또는 피해의 정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는 경우에 피해자가 피해의 전부를 배상받도록 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므로 피해자의 잘못의 정도만큼 배상액을 감하는 것을 과실상계라고 한다.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는 가해자측에서 증거를 대야 하지만 결국 얼마의 비율로 피해자의 잘못을 인정할 것인가는 법원이 정하게 될 것이다.

배상금 합의 요령

가해자와 피해자가 소송을 하기 전에 서로 원만히 합의를 하면 양측에 서로 유리한 점이 있다. 즉 피해자는 소송비용이 들지 않고 신속히 배상을 받게 되고 가해자도 형사사건에 있어 유리한 조건이 되고 또 소송에 이르게 되면 합의금보다 고액의 배상금을 물게 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서로 웃는 낯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①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문병을 하는 등의 성의를 보여야 한다.

② 서로 이성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어 감정대립을 피하여야 한다. 보통 피해자의 경우는 흥분하기 쉬우므로 이 점을 가해자는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사망한 사고의 경우에는 유족의 감정을 부드럽게 할 필요가 있다.

③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정도, 범위, 과실정도 등에 대하여 굳이 변호사가 아니라도 법률에 밝은 사람과 상의하여 정확한 자료를 서로간에 준비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서로간에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다.

④ 합의를 보는 경우에 간혹 브로커가 개입하는 수가 있는데 상대방이 과연 정당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적절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계속 대화와 타협을 하면 서로 양보할 수 있는 선이 나타날 것이므로 그 기회를 잘 포착하여야 한다. 그리고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⑥ 합의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우선 합의의 대상이 되는 사고자체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고, 합의의 당사자 및 합의 조건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특히 합의서에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겠다"라는 문구를 넣을 때는 보다 신중해야 하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휴유증 발생시는 이를 가해자측이 책임지고 치료해 줌은 물론 그로 인한 손해도 모두 배상해 준다"라는 단서를 넣어두면 안전하다.

♣ 생활법률